

(우)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7(이촌동) [http://www.kma.org] / 전화(02)6350-6571/ 전송(02)790-8911
보험국 보험국장 김기성[6574] 보험정책팀장 백영기[6581] 팀원 김용덕[6571]/E-mail :kma6350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8947호

시행일자 2023. 10. 17 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자율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최근 복지부에서는 국회 지적에 따라 코로나19 진료비 표본조사 결과에 따른 코로나 진료비 부당청구 의심 병·의원 8천여기관에 대한 확대조사 계획안을 보고한 바 있습니다.

3. 이와 관련하여, 우리협회는 복지부 및 공단과의 수차례 협의를 통해, ① 백신접종 당일 별도 진찰료 청구 ②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③ 출국목적 진단검사 후 별도 검사비 청구 등에 대해서는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를 중단하고 공단이 실시하는 자율시정 방식을 통해 행정처분 없이 부당금액에 대해서만 환수키로 결정되었습니다.

4. 공단에서는 우선 재택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건과 관련하여 2023.10.16. 일 대상기관에 우편을 발송하여, 재택치료 10개월(2021. 9. 1.~2022.6.30.) 청구분에 대한 자율시정을 진행 중이며, 공단 요양기관정보마당에서 대상리스트(엑셀)를 다운받아 정당 및 부당을 체크 입력하고 2023년 10월 31일까지 업로드 하도록 업무부담을 최소화하였습니다.

5. 이에, 부당청구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자율시정을 통해 환수조치로 갈음할 예정인 바, 미시정에 따른 방문확인 및 현지조사로 인한 행정처분의 피해가 없도록 소속 회원들에게 동 사항을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6. 아울러, 관련 문의사항은 건강보험공단 급여조사부 및 우리협회 보험국
(☎ 02-6350-6581)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대한의사협회장

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수신처: 각 시도의사회장, 대한의학회장(26개 전문학회장), 대한개원의협의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,
대한병원장협의회장, 한국여자의사회장